

**새만금 수상태양광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제안서 처리 지침**

2019. 11.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수상태양광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제안서 처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발전사업을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의 제안서 작성, 접수, 검토, 심의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 수상태양광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이하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새만금 투자사업과 발전사업을 연계·병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투자사업”이라 함은 제3호의 발전사업에 매칭되는 투자계획을 새만금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새만금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제2장의 사업을 말한다.
3. “발전사업”이라 함은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을 위해 배정된 수상태양광 1.4GW 규모의 발전사업으로써, 민간투자자의 새만금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하기 위한 제3장의 사업을 말한다.
4. “제안서”라 함은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의 제안을 위해 민간투자자가 본 지침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에 제5조에 따라 제출을 완료한 서류를 말한다.
5. “제안자”라 함은 제4호에 따른 제안서를 새만금청에 제출한 자로써, 단독 또는 다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말한다.
6. “발전사업권 배정자”(이하 “사업배정자”라 한다.)란 이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된 자로 전북도지사,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표이사를 말한다.

제3조(제안서 작성) ① 제안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되, 제5조 내지 제11조를 참조하여 사전검토, 관계부서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안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규격은 발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A4를 가로형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등은 붙임으로 첨부한다.

- ③ 작성내용 중 “가능하다”, “~로 본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한 표현은 제안서 심의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안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나, 질의를 새만금청에 ‘19.12.13. 17:00까지 <서식1>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kkan0223@korea.kr)로 요구할 수 있으며, 새만금청은 자료 및 질의답변 사항을 새만금청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한다.

제4조(제안서 처리 절차) 제안서가 제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관 련 절 차	세 부 내 용
제 안 서 제 출	- 제안자 → 새만금청
제안서 사전 검토	- 새만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선정) 기본 요건에 적합할 경우 • (보완) 서류미비, 누락 등 ※ 미보완 등 기본 요건에 부적합한 제안서는 심의절차 미이행
관 계 부 서 검 토	- 새만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입지여건 적합 여부 등 확인 ※ 관계부서 검토 결과 부적합한 제안서는 심의절차 미이행
제 안 서 심 의	-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새만금청, 관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개발의 정책 부합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등
제 안 서 채 택	- 제3자 공모를 위한 제안서로 채택

제5조(제안서 접수) ① 제안서는 새만금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안서 제출서<서식2>

나. 제안서(제6조제1항각호의 서류 포함) 25부<서식3>, 제안서 파일(PDF)이 저장되어 있는 USB 1개

다.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서류

- 1) 법인(또는 컨소시엄 대표사)의 대표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포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7> 각 1부
- 2) 법인(또는 컨소시엄 대표사)의 대표가 아닌 경우 : 위임장<서식4>, 재직증명

서<서식5>, 신분증(사본포함),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서식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7>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에는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날인

라.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사 선임서<서식8>

마. 제안자 서약서<서식9>

③ 새만금청은 제출된 제안서를 비공개 처리한다.

④ 제안서는 수시로 접수하되, 원활한 제안서 처리를 위해 접수 마감은 '20.1.10. 17:00까지로 하고, 추가 접수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

제6조(제안서 사전검토) ① 새만금청은 제안서가 제출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 사업계획서

나. 제안자의 경영상태, 재무구조 관련

다. 투자 내용의 적정성

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마. 새만금 개발방향과 적합성

바. 새만금 개발 촉진 가능성

사. 지역경제 파급 효과

아. 사업실행 가능성

자.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확인 검토결과 서류미비, 기재사항이 누락된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관계부서 검토) ① 관계부서는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서는 제안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 제안자의 이익에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상정) 새만금청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토가 완료된 제안서를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의 보완요구에도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와 제7조에 따라 관계부서 검토 결과 법령 등에 맞지 경우에 해당되는 제안서는 상정할 수 없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안서 심의는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시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로 구성하며, 사업부서는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가. 당연직 : 새만금청 차장,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

나. 위촉직

- 1) 새만금청 관계부서 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의 제안서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장을 위촉
- 2) 전북도청 공무원 1명, 새만금개발공사 직원 1명을 해당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새만금청 차장으로 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대신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심의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할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⑥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 시작 전에 제5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포기하여야 하며,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식10>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절차)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관 련 절 차	비 고
심 의 위 원 회 개 의	- 위원장 진행
위 원 별 제 안 서 사 전 검 토	- 심의위원이 제안서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심의 당일 시간 부여
제 안 자 설 명 및 질 의 응 답	- 질의응답 후 제안자 퇴장
제 안 서 채 택 여 부 심 의	- 위원별 처리 의견을 회의식으로 논의
심 의 의 결 서 작 성	- 심의위원이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 제안서 채택여부 확정

제11조(심의 기준 및 방법)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산업투자형

심의분야	심 의 내 용	비고
재무구조, 경영상태	최근 3년간 부채비율(부채/총자산) 및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자본금 대비 투자사업비 규모	
투자 내용의 적정성	제16조에 따른 투자사업의 기본방향 부합여부, 투자내용과 새만금 및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미래지향성, 친환경성 등	
사업 규모 적정성	투자사업의 투자규모(총투자비, 고용인원 등)와 인센티브로 연계하는 발전사업 규모의 적정성	
새만금 개발방향과 적합성	산업투자형 사업과 새만금 개발방향의 적합성	
새만금 개발 촉진 가능성	산업투자에 따른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 상승, 연관기업의 입주 가능성(클러스터 조성 등) 등이 큰 투자	
지역경제 파급효과	투자사업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사업실행 가능성	산업투자형 사업의 자원조달 계획, 현실성, 구체성, 신뢰성, 타당성 및 사업추진의 담보성(사업 미이행에 따른 보증 등)	

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개발투자형

심의분야	심 의 내 용	비고
재무구조, 경영상태	최근 3년간 부채비율(부채/총자산) 및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자본금 대비 투자사업비 규모	
투자 내용의 적정성	제16조에 따른 투자사업의 기본방향 부합여부,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내용의 필요성, 시급성, 새만금 기본계획의 수용성 등	
사업 규모 적정성	투자사업의 투자규모(총투자비, 고용인원 등)와 인센티브로 연계하는 발전사업 규모의 적정성	
새만금 개발방향과 적합성	개발투자형 사업과 새만금 개발방향의 적합성	
새만금 개발 촉진 가능성	새만금의 투자가치 상승, 개발 대상지의 경쟁력 확보, 투자유치 촉진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투자사업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사업실행 가능성	개발투자형 사업의 자원조달 계획, 현실성, 구체성, 신뢰성, 타당성 및 사업추진의 담보성(사업 미이행에 따른 보증 등)	

※ 제안자가 컨소시엄일 경우, 재무구조, 경영상태 분야의 심의는 자산총계가 제일 많은 회사와 차순위 회사의 자료를 심의한다.

- ② 제안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를 위해 제안서는 심의 당일에 배부한다.
- ③ 심의는 제안자의 제안내용 설명(25분 이내)과 질의응답 후 비공개 회의 순으로 진행한다.
- ④ 제안자에 대한 질의응답이 종료되면 제안자는 퇴장하고, 제안서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한다.
- ⑤ 논의를 통해 제안서를 “채택”, “불채택”으로 구분하여 종합 심의결과를 결정하여 의결한다.
- ⑥ 최종 심의결과의 채택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은 심의의결서<서식 11>에 서명한 후 제안서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

제12조(제3자 공모 추진) 새만금청은 제11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서를 토대로 제3자 공모를 추진하며, 제3자 공모시 제안서의 공개범위는 사업 특성에 따라 제안자와 협의하여 새만금청이 결정한다.

※ 참고로, 제안서 채택은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의 제안내용이 채택된 것으로,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의미는 아니며, 사업자 선정은 제3자 공모의 절차로 추진한다.

제13조(채택된 제안서의 가점) 채택된 제안서에 대해서 제3자 공모를 추진할 경우, 제안서의 채택에 따른 별도의 가점은 없으나, 추후 시행될 제3자 공모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채택된 제안서의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지정한다.

제14조(제안서 채택 무효) 제안서로 채택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새만금청이 인지한 경우 새만금청은 제안서 채택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

1. 컨소시엄 대표 출자자인 법인의 대표자 기명날인 등이 허위일 경우
2. 복사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의 주요 부분이 타인의 것을 도용한 경우
3. 기타 제안서가 부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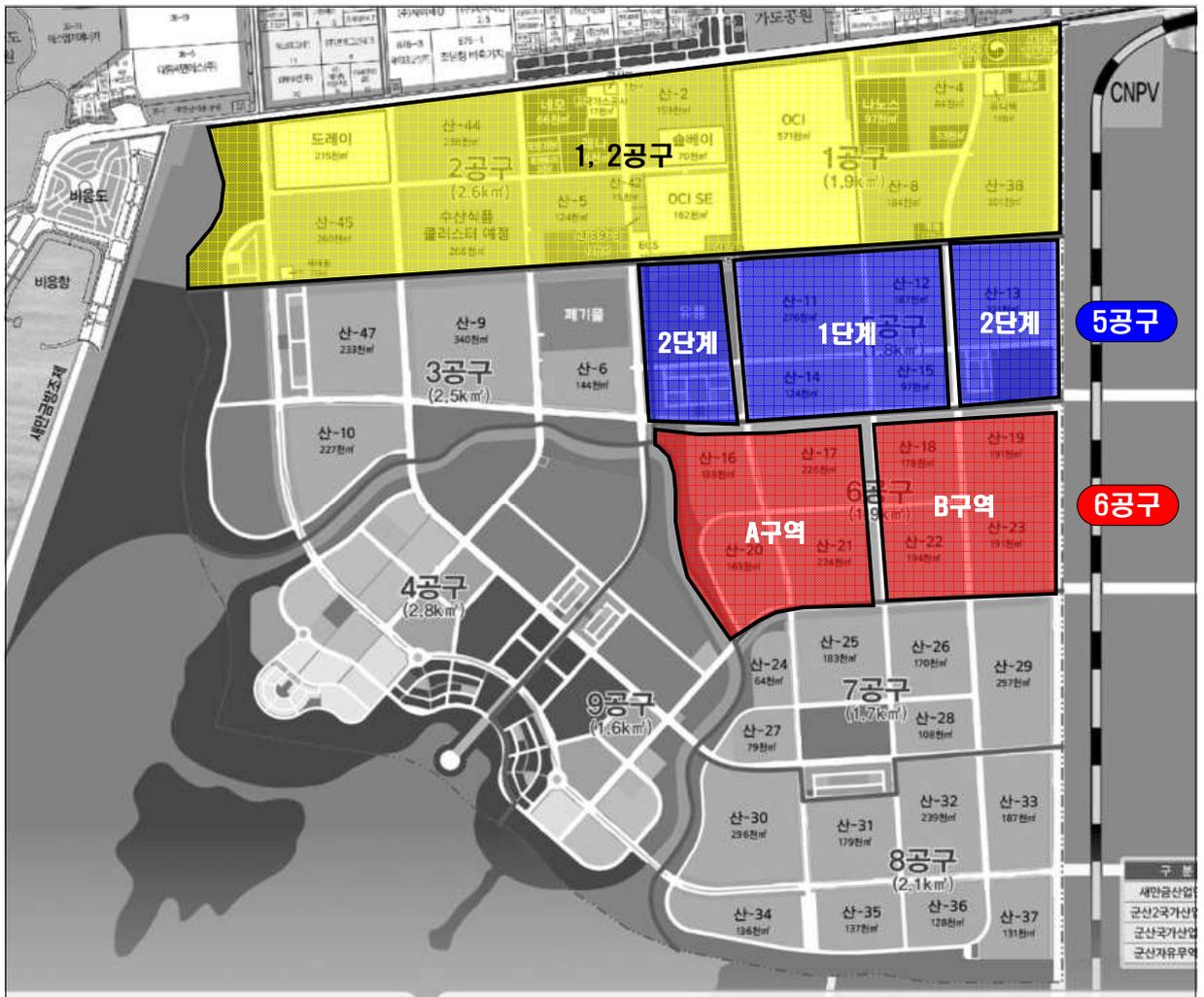
제2장 투자사업

제15조(투자사업의 유형) ① 산업투자형 : 부가가치가 큰 첨단산업 관련 제조시설 또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앵커기업 등의 입주
② 개발투자형 : 용지조성 및 상부시설의 설치(복합문화시설, 관광리조트 등)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열거한 투자유형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다양한 투자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16조(투자사업의 기본방향) ① 투자사업은 새만금의 개발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신규 사업에 한한다.
② 투자사업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인 경우는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는 2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③ 산업투자형은 전자, 정보통신, 기계, 부품 등 대규모 첨단산업의 새만금 투자를 우선으로 한다.
④ 개발투자형은 단순한 매립보다는 용지조성 및 상부시설 설치 등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제17조(투자사업 대상 지역 및 유형) 투자사업 유형은 대상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대상지역별 적용 가능한 투자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 지침 시행 후 권리권자 변경, 정책변경, 공사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여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여건에 따라 지침을 적용한다.

1. 산업연구용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임
 - 가. 1, 2 공구 : 산업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된 지역으로, 입주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지역에 산업투자가 가능
 - ※ 나머지 부지는 입주계약 및 투자협약이 체결되어 투자사업 불가
 - 나. 5공구(1.8km²) : 산업연구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1단계 사업구역(0.93km²)은 22년부터, 2단계 사업구역(0.88km²)은 23년부터 산업투자가 가능하다.
 - 다. 6공구(1.9km²) : 산업연구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A구역(1.01km²)은 22년 하반기부터, B구역(0.89km²)은 23년도 하반기부터 산업투자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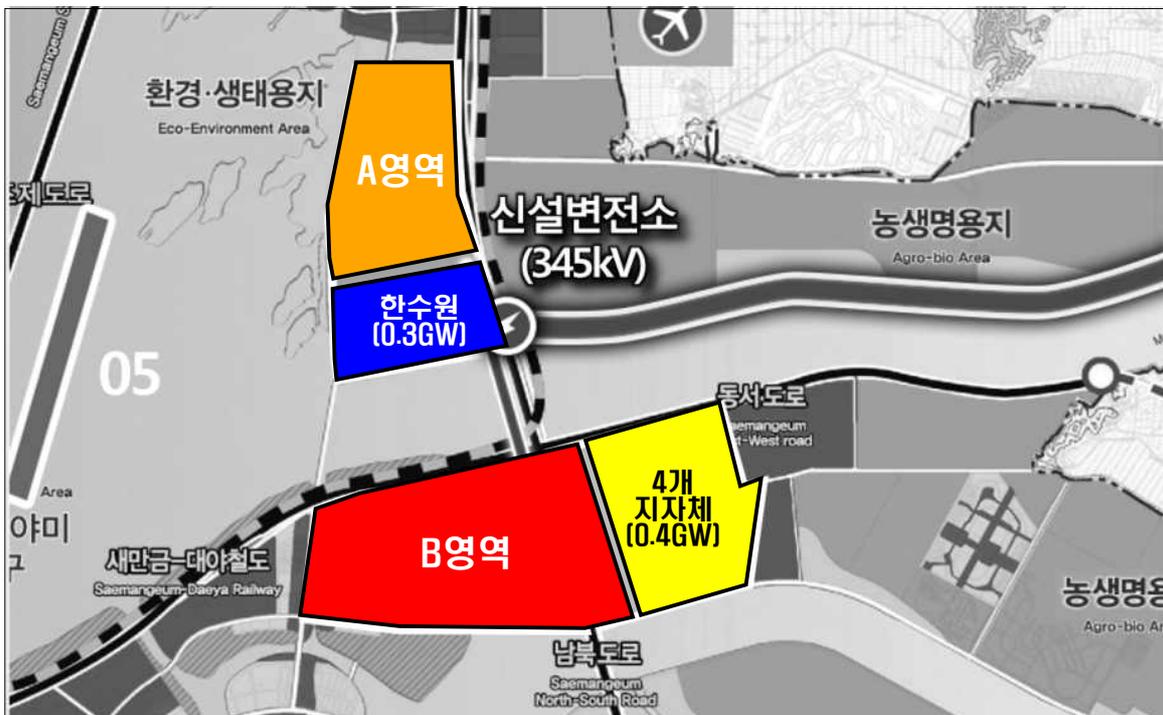
제3장 발전사업

제18조(사업개요) 발전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 새만금 수상태양광 1.4GW 발전사업

※ 새만금지역의 태양광 총 발전용량은 2.4GW이며, 이중 육상태양광은 0.3GW, 수상태양광은 2.1GW로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용량 중 1.4GW를 대상으로 함

2. 사업위치 :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일부



※ 구역별 범위는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3. 발전면적 : A영역 0.5GW 6.6km², B영역 0.9GW 11.8km²

※ 발전면적(용량)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 가능

4. 사업기간

가. 1단계 : 0.5GW를 준공일로 부터 후 20년간 운영('22년 4월부터 운영 계획)

나. 2단계 : 0.9GW를 준공일로 부터 후 20년간 운영('26년 1월부터 운영 계획)

※ 수상태양광 전체 2.1GW의 계통연계가 2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1.4G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도 이와 연계하여 단계별로 추진

5. 추진현황

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및 관계기관 MOU체결('18.10.)

나. 수상태양광 2.1GW 전기사업허가 완료(한수원, '19.07.)

다. 한수원 및 4개 지자체 구역 설정 완료('19.11.)

라. 수상태양광 2.1GW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중(한수원)

□ 참고 :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소계	용량	사업배정자	위 치	비고
태양광	육상	0.3	0.2	새만금개발공사	①	0.1GW SPC 설립
			0.1	군산시	①	사업추진방안 검토중
	수상	2.1	0.4	전북도, 군산, 김제, 부안	④	"
			0.3	한국수력원자력(주)	② 최남측	SPC 설립
		1.4	미정	②③④	제안서 접수중	
풍력		0.1	0.1	새만금해상풍력(주)	⑤	착공준비중
연료전지		0.1	0.1	미정	⑥	사업자선정방안 검토중
합 계		2.6GW				

제19조(노출부지 등 처리) ①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각 구역의 노출부지 등은 준설하여 새만금청이 지정한 위치에 적치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구역별로 해당 사업자가 용량별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립사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노출부지 부지의 처리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가. 2번 구역 : 북측 인근 산업연구용지에 적치
- 나. 3번 구역 : 3번 구역 내 일정 지역에 적치
- 다. 4번 구역 : 동측 인근 국제협력용지에 적치

제20조(계통연계) ①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 송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계통연계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대상지역에 설치되는 345kV의 신설변전소(2, 3, 4번 구역 연결망, 전기실 등 부대시설 포함)에서 345kV 신설개폐소(군산변전소와 새만금변전소의 송전선로에 접속을 위해 설치)까지 연결된 송전선로 구간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계통연계에 소요되는 정산 비용은 계통연계를 추진한 사업자와 전체 발전사업자간에 협의하여 발전용량에 따라 균등 분담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참여) ① 발전사업은 지역상생을 위해 주민참여율을 용량의 10%(0.14GW)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주민수익율은 7%를 보장하여야 하며, 투자기간은 15년 만기를 원칙으로 하되, 중도환매가 가능하며, 상환방식이나 중도환매가능 시점은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자가 새만금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주민 1인당 투자한도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고, 참여자격은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자가 지정하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전북 거주 주민으로 한다.

- 제22조(매립면허권 사용료)** ①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매립면허권을 사용·수익한 대가로 새만금개발공사가 마련하는 기준에 따라 발전매출액의 일부를 지불하여야 한다.
- ② 납부방법, 납부시기 등은 새만금개발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기타사항

- 제23조 (유의사항)** ① 제안자는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새만금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새만금 개발방향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하되,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 ③ 본 지침, 법령, 저작권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 ④ 본 지침에 따른 제안서 검토, 심의 등을 통해 적합한 제안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안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 (비용부담) 제안서 준비, 작성, 제출, 협의 및 협상 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제25조 (저작권) 새만금청에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새만금청이 활용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서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새만금청에 귀속된다.

- 제26조 (기타사항)** ①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 및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의 해석에 따른다.
- ② 본 지침에 따른 각종 공지사항 등은 새만금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에 공지할 수 있으므로, 제안자 등은 수시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료요청 및 질의서

요청구분	(자료요청, 질의사항) ※ 해당 사항에 0표시
요청사항	○ ○ ○ ○
<p>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자료, 답변)를(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사 대표이사 (인)</p> <p>새만금개발청장 귀하</p>	

재무구조(최근3년)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평 균
자본총계				
부채총계(A)				
자산총계(B)				
부채비율 (A/B*100)				
유동자산(C)				
유동부채(D)				
유동비율 (C/D*100)				

자본금 대비 투자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자본총계(E)	투자사업비(F)*	비율 (E/F*100)	비고
금 액				

* 투자사업비는 발전사업비가 제외된 순수 투자사업비를 의미한다.

붙 임 근거자료(재무제표 등) 1부.

- 주) 1. 최근 결산 공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2. 설립 후 3년이 안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연도만 기재한다.
 3. 컨소시엄일 경우 자산총계가 제일 높은 회사와 차순위 회사의 자료를 제출한다.

※ 사업계획서, 투자 내용의 적정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새만금 개발방향과 적합성, 새만금 개발 촉진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실행 가능성, 그 밖에 사항은 내용은 자유서식으로 작성

위 입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소속업체		부서/직위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 년 월 일

○○○사 대표이사 (인)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주) 1.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사, 참여사 및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짐.
2. 대리인은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사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가능.

<서식 6>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법인 인감	
(인)	(인)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위 인감은 신청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귀 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 인감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신청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 부.

2020 년 월 일

신청인

○○○사 대표이사

(인)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 업 명 : 새만금 수상태양광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위 사업의 제안서 접수와 관련하여 제안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또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서약자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새만금개발청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목 적 : 제안 절차의 진행을 위한 관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 사업의 사업자 최종 선정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020 년 월 일

동의자 : (인)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사 선임서

사 업 명 : 새만금 수상태양광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상기사업의 참여함에 있어 컨소시엄 구성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며, 본 사업의 제안서 처리 지침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사 (대표이사 ○○○)에게 위임합니다.

구분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비고
대표사					
공동 참여사					

2020 년 월 일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제안자 서약서

본인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시행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의 제안자로서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새만금청의 제안서 보완요구에도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와 관계부서 검토 결과 법령 등에 맞지 경우에 해당되는 제안서는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
2. 채택된 제안서의 공개범위여부는 사업 특성에 따라 제안자와 협의하여 새만금청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3. 채택된 제안서에 대해서 제3자 공모를 추진할 경우, 채택된 제안서의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가점은 없다.
4. 제안서로 채택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새만금청이 인지한 경우 새만금청은 제안서 채택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
 - 가. 컨소시엄 대표 출자자인 법인의 대표자 기명날인 등이 허위일 경우
 - 나. 복사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의 주요 부분이 타인의 것을 도용한 경우
 - 다. 기타 제안서가 부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5. 제안자는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지침, 법령, 저작권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7. 지침에 따른 제안서 검토, 심의 등을 통해 적합한 제안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안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8. 제안서 준비, 작성, 제출, 협의 및 협상 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9. 새만금청에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새만금청이 활용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서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새만금청에 귀속된다.
10. 지침의 해석상 이견 및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의 해석에 따른다.
11. 지침에 따른 각종 공지사항 등은 새만금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에 공지할 수 있으므로, 제안자는 수시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0 년 월 일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사 대표이사 (인)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심의위원 서약서

본인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시행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1.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의 심의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의 심의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심의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겠습니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심의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청렴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해당 심의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심의의결서

심의대상

- 접수번호 : 2020 - 00
- 제안자 : 0000업체 대표 0000(대표사)

심의결과

의결결과	심 의 의 견
	○ ○ ○

※ 최종 의결결과는 “채택”, “불채택”으로 표기

상기와 같이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 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 명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장				

새만금개발청장 귀하